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donesia: Updated regulations on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ril 7th, 2020\)](#)

인도네시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관련 개정내역 발표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최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발효된 주요 개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A 신청 대상기간의 연장:** 과거 일방APA의 신청 대상기간은 최대 3개 사업연도, 쌍방 APA의 경우 최대 4개 사업연도까지 신청가능했으나, 소급적용(Rollback)기간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APA 규정에 따라 일방 및 쌍방 APA 모두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신청가능하며 소급적용기간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소급적용기간의 경우 APA 신청조건과 동일한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신청가능 합니다.
- **연례보고서 제출의무의 폐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례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타결된 APA 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납세자에게 필요에 따라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April 13th,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사업활동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APA 연장신청 절차:** 최초 APA 타결 당시의 조건들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정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1회 연장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기존은 APA 갱신 시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신규 개정사항들은 행정절차 및 제출기한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방법론에 대한 지침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Hong Kong: Revised guidance,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nd intersection with transfer pricing \(April 3rd, 2020\)](#)

홍콩: 이전가격 규정과 관련된 디지털세 지침 개정

2020년 3월 27일 홍콩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세에 대한 제39호 개정판 -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제(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39 - Profits Tax Digital Economy,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Assets, 이하 "DIPN 제39호")를 발간했습니다.

개요

DIPN 제39호는 2001년 7월 발간된 개정 전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업 프로세스 상 수집되는 데이터(예: 고객의 개인정보) 및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Direct and indirect network effects)를 핵심 가치창출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 홍콩 세무당국은 세법(Inland Revenue Ordinance, "IRO") 상 구체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부재한 경우 IRO 제14조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홍콩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소득의 귀속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홍콩 세무당국은 온라인상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전자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핵심 경영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핵심경영활동이 수행되는 국가를 전자상거래 소득의 귀속 국가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 홍콩 세무당국은 비거주자가 홍콩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전자상거래 사업 운영에 있어 컴퓨터시스템, 서버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이 전자상거래 사업상 단순 보조활동이 아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인지 여부라고 명시했습니다.
- 홍콩 세무당국은 비거주자의 소득을 홍콩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OECD 접근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본 접근법은 2단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 (1) 홍콩 고정사업장을 기능적으로 분리된 실체로 간주한 후 관련 자산 및 위험을 홍콩 고정사업장에 귀속함
 - (2)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함
- 홍콩 세무당국은 디지털 화폐 관련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콩 세무당국의 의견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최초 상장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IRO 제 14 조 일반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디지털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홍콩 세무당국은 디지털 자산의 처분이 투자자산의 양도소득 성격인지 매매상품의 판매소득 성격인지 추가적으로 판단합니다.

시사점

DIPN 제39호의 개정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사업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디지털 경제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제상 문제를 다룬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경제발전을 고려한 진보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세무당국이 제시한 핵심 경영활동이 수행되는 장소가 전자상거래의 핵심 가치창출 요소로 적합한지, 해당 장소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인지, 그리고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장소인지에 대한 견해는 명확한 세부 규정 없이는 상황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세무당국은 내년 BEPS 2.0에 대한 논의 및 디지털 세제가 확정된 후 해당 접근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ndia: Digital taxation, enlarging the scope of "equalisation levy" (March 24th, 2020)

인도: 디지털세를 통한 "균등부과금("equalisation levy)"의 대상범위 확장

인도 정부는 "균등부과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에 2%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2020년 재정 법안(Finance Bill)을 발의했습니다(2020년 4월 1일 발효).

균등부과금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는 금융법(Finance Act 2016)상 특정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균등부과금"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본 제도에 따라 온라인 광고 및 디지털 광고 플랫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 목적의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에 대해 6% 세율을 부과하여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서 명명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온라인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등을 소유, 운영, 관리하는 비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다음 활동을 포함합니다.

-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상품 판매
-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판매 관련 활동(예: 이용자간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활동을 위한 플랫폼 제공)
- 상기 활동과 유사한 활동

본 법안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다음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용됩니다.

- 인도 거주자
- 비거주자 중 인도 거주자 또는 인도 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광고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 인도 IP 주소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

균등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 중 인도 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관련 고정사업장을 운영

- 상기 정의된 "특정 서비스"에 대해 6% 세율이 적용된 활동
- 상기 명시된 인도 거주자, 비거주자 및 인도 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총 매출액이 2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약 USD \$267,000)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균등부과금의 경우 인도 거주자가 납입할 의무를 갖는 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이 분기별로 해당 의무를 이행합니다.

Denmark: Proposals for changes to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ules (March 22th, 2020)

덴마크: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요건에 대한 개정 추진

배경

덴마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덴마크의 현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최신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까지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회사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 구비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현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세무당국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신 사업연도 기준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덴마크 세무당국(The Ministry of Taxation)의 계획에 따라 이전가격 규정이 개정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규정 개정 추진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요건의 개정사항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 후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대한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가격 규정의 평가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세무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후 보고서 제출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규정에 따라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자는 2021년 8월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